

국회도서관법

[시행 1988.12.29.][법률 제4037호, 1988.12.29., 제정]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회도서관(이하 "도서관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① 도서관은 도서 기타 도서관자료·헌정자료 및 문헌정보를 수집·정리·분석·보존하고 도서관봉사와 입법자료분석업무를 행함으로써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한다.

② 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자료 및 사무에 대한 전산화계획의 수립과 추진등 국회업무의 전산화사무를 관장한다.

③ 도서관은 제1항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, 공공단체, 교육·연구기관 및 공중에 대하여 도서관봉사를 제공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봉사의 대상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공무원의 임용) ① 도서관에 국회도서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.

② 5급이상의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, 기타의 공무원은 관장이 임면한다. 다만, 의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조(관장) ① 관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.

② 관장은 정무직으로 하고,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.

③ 관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도서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다만, 도서관관련사무 중 인사행정·예산회계·국유재산관리·물품관리·비상계획업무·공직자재산등록업무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·국가공무원법·예산회계법·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5조(전산화사무등을 위한 협조) 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회업무의 전산화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관장은 국회사무총장에게, 국회사무총장은 관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관장은 입법자료분석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조직) ① 도서관의 보조기관은 국장·실장 및 과장으로 한다.

② 관장 및 국장·실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, 관장밑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.

③ 국장은 2급 또는 3급, 과장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각각 보하고, 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, 담당관은 4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.

④ 국·실·과 및 담당관의 종류·정원·분장사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자료의 제공 및 납본) ①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도서·연속간행물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이나 국제교환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10부를 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도서·연속간행물 기타 규칙이 정하는 입법정보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

다. 이 경우 도서관은 납본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.

- ③ 관장은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납본의 절차·보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기증) 관장은 도서관에 물품 또는 금전의 기증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받을 수 있다.

제9조(도서관자료의 상호교환·이관 및 폐기) ① 관장은 소장자료중 도서관자료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다른 도서관·국가기관·공공단체와 상호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.

- ② 관장은 소장자료중 이용가치가 상실되거나 오손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교환·이관 및 폐기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) ①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및 도서관정보협력망구성등에 관한 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장 소속하에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(시차제 근무) 관장은 국회의 회기중에 한하여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위임규정)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정한다.

부칙 <제4037호, 1988.12.29>

- 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(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)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은 이 법에 의한 규칙이 제정·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등으로 본다. 다만,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한다.
- ③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소관업무(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)를 담당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국회도서관소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